

15차 사회복지관 운영이사회 회의결과

- ☐ 일 시 : 2026년 09월 07일 10시00분
☐ 장 소 : 가은병원 회의실
☐ 위원명단

구분	성명	참석여부	비고
위원장	이*희	참석	
위원	조*검	참석	
위원	장*문	참석	
위원	이*룡	참석	
위원	이*문	참석	
위원	박*균	참석	

※ 배석 :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권*철 관장

☐ 안건사항

1.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(안) 심의 : 원안대로 승인함
2.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6년 3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 : 원안대로 승인함
3. 춘의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재위탁(수의) 신청 및 수탁운영 승인 건 심의 : 원안대로 승인함

□ 안건사항1 :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(안)

가. 개정사유

- 1) 올해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확대 시행에 따른 해당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.
- 2)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휴가제도 개선(안)을 적용하고자 함.

나. 개정요구(안)

-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(2일->4일)로 노동법령 기준을 준수하고자 함.
- 부천시 처우개선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(경력 20~30년 미만, 30년 이상 종사자에 5일의 유급휴가 추가 지원, 새내기 도약휴가 지원)을 운영규정에 적용하고자 함.

다. 관계법령 발취서

-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3(난임치료휴가)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
-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

라. 예산 수반사항 : 없음

마. 시행일자 : 부천시 최종 승인 후 시행

춘의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

[운영규정]

운영규정	현행	개정 (안)	개정사유	검토결과						
직원 복무규정 제3장 휴가	제 14조의 3(난임치료휴가) 1. 직원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‘난임치료휴가’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로 하며, 최초 2일 은 유급으로 한다. 단,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	제 14조의 3(난임치료휴가) 1. 직원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‘난임치료휴가’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로 하며, 최초 4일 은 유급으로 한다. 단,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	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3 개정에 따른 적용							
인사규정 제4장 상벌	제 12조(포상) 4. 장기근속휴가 ... 라) 장기근속자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 직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. 마) 장기근속자 중 30년 이상 경과한 직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. ... 5. 포상을 받은 직원에게 인사고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. <5. 신규규정 신설에 따른 6. 문구 이동>	제 12조(포상) 4. 장기근속휴가 ... 라) 장기근속자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. 마) 장기근속자 중 30년 이상 경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. ... 5. 새내기 도약휴가 가) 복지관 재직 종사자 중 1~5년 미만 종사자에게 부천시 소재 기관 인정경력에 따라 유급휴가(최대 3일)를 단계적으로 지급한다. 단, 현소속 기관 재직기관 1년 이상 경과 후 도약휴가 지원이 가능하다. <table border="1"><tr><td>1년이상</td><td>2년이상</td><td>3년~5년 미만</td></tr><tr><td>1일</td><td>1일(누적)</td><td>1일(누적)</td></tr></table> 나) 군경력은 최대 3년까지 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며 현 소속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이전 시설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이 가능하다. 단, 이전기관 미사용 휴가 승계 및 소급적용은 불가하다. 다) 휴가자는 사전의 관장에게 사용승인, 휴가 후 15일 이내 휴가사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. 라) 발생된 도약휴가에 대한 사용은 5년 장기근속휴가 발생 전까지 사용해야 하	1년이상	2년이상	3년~5년 미만	1일	1일(누적)	1일(누적)	부천시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유 급 휴 가 제도 개선 (안) 반영	
1년이상	2년이상	3년~5년 미만								
1일	1일(누적)	1일(누적)								

		며, 이후에는 소급이 불가하다. 단, 사용 가능 기간 내에는 분할 또는 누적사용이 가능하다. 마) 그 외 세부내용은 경기도 처우개선 지원사업(장기근속 휴가) 지침을 준용한다. 바) 재직기간 산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경력인정 범위에 따른 호봉 인정 시설 근무경력 기준에 따른다. 6. 포상을 받은 직원에게 인사고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.		
--	--	---	--	--

➔ 심의결과 : 원안대로 통과

□ 안전사항2 :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6년 3차 추가경정예산(안)
가. 2026년 3차 추가경정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기관명	2026년2차 추경) (A)	2026년(3차 추경) (B)	증감 (B-A)
춘의종합사회복지관	1,880,587	1,900,087	19,500

나. 주요사유

기관명	주요 사유	
춘의종합사회복지관	세입	<u>총 19,500천원 증가</u> ▶ 사업수입 : 동일 ▶ 보조금 : 8,000천원 증가 ▶ 후원금 : 11,500천원 증가 ▶ 법인전입금 : 동일 ▶ 이월금 : 동일 ▶ 잡수입 : 동일
	세출	<u>총 19,500천원 증가</u> ▶ 사무비(인건비,업무추진비,운영비) : 5,000천원 감소 ▶ 재산조성비 : 5,000천원 증가 ▶ 사업비 : 19,500천원 증가 ▶ 잡지출 : 동일 ▶ 예비비 : 동일

➔ 심의결과 : 원안대로 통과

□ 안전사항3 : 춘의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재위탁(수의) 신청 및 수탁운영 승인 건 심의
가. 신청 및 운영 승인 : 본 법인은 춘의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재위탁 신청에 참여하고,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위·수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성실히 운영할 것을 승인함.